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 104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,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
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0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예그린 스페이스 대관 신설, 문화시설 명칭 변경 및 사용료 일반기준, 개별기준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
- 대관료 인상을 통한 현실화
 - 2010.12.29. 조례 개정 이후 7년여 동안 정해진 기준 금액으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함
 - 물가상승률 및 유사 공연장의 사용료를 참조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대관료 인상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일반기준 구체적으로 명시화

- 기본 사용료 평일/야간 기준 구체적으로 표현
 - (현행) 평일 → (변경) 평일 주간(월요일~금요일 09:00~18:00)
 - (현행) 야간 → (변경) 평일 야간
- 기본 사용 시간 및 사용료 횟수, 오전/오후/야간/심야 시간 기준 추가

나. 문화시설 명칭 변경 및 예그린 스페이스 대관 신설 등

- 충무갤러리 명칭을 "갤러리"로, 컨벤션센터 명칭을 "컨벤션홀"로 각각 변경
- 예그린 스페이스 대관 신설

구 분	기본대관료	기본사용기준	대 상	비 고
예그린 스페이스	150,000	4시간	전시, 공연	부대설비 별도
	200,000	8시간		

다. (재)중구문화재단 경영합리화 운영 계획 방침(대관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른 대관료 인상 및 사용기준 구분

- 대극장 순수예술 공연 기본대관료 인상
 - (현행) 1,250,000원 → (변경) 1,500,000원
- 대극장 대중 및 종합예술 공연 기본대관료 인상 및 사용기준 구분
 - (현행) 2,500,000원 → (변경) 2,500,000원(평일 주간)
 - (변경) 3,000,000원(토·일·공휴일, 평일야간)
- 중극장 공연 기본대관료 인상
 - (현행) 500,000원 → (변경) 500,000원(평일 주간)
 - (변경) 600,000원(토·일·공휴일, 평일야간)
- 컨벤션홀 기본이용료 인상
 - (현행) 200,000원 → (변경) 220,000원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[참조 : 문화관광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: 02-3396-4603, FAX 02-3396-8621, oje81@junggu.seoul.kr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관광과
(02-3396-4603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(제14조 관련)

1. 사용료 일반기준

- 가.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 주간(월요일 ~ 금요일, 09:00~18:00)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.
 나. 기본 사용 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며, 사용료는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.(단, 갤러리는 1일 8시간으로 한다)
 다. 토.일.공휴일과 평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%를 할증할 수 있다.
 라.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마.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% 이내, 입장료의 30%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
 바. 오전 : 09시~12시, 오후 : 13시~18시, 야간 : 19시~22시, 심야 : 23시~02시

2.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

가. 공연장 및 갤러리 대관료

(단위 : 원/부가세 별도)

구분			기본대관료	기본사용기준	대상	비고
대극장	순수예술	공 연	1,500,000	1회 3시간	클 래 식	
		리허설	625,000	1회 3시간		
	대중 및 종합예술	공 연	2,500,000	1회 3시간 평일 주간	뮤지컬, 무용, 대중콘서트, 오페라 등	
			3,000,000	1회 3시간 토.일.공휴일 평일 야간 (리허설 포함)		
		리허설	1,250,000	1회 3시간		
		심야 세팅. 철수	2,500,000	1회 3시간		
중극장	공 연		500,000	1회 3시간 평일 주간	공 연	냉.난방,음향장비, 조명, 영상장비 등 포함
			600,000	1회 3시간 토.일.공휴일 평일 야간 (리허설 포함)		
	리허설 및 세팅		250,000	1회 3시간		
	심야 세팅.철수		500,000	1회 3시간		
소극장	공 연		400,000	1회 3시간	공 연	
	리허설 및 세팅		200,000	1회 3시간		
	심야 세팅.철수		400,000	1회 3시간		
갤러리			400,000	1일 8시간	회화, 조각 등 전시	
에그린 스페이스			150,000	4시간	전시, 공연	부대설비 별도
			200,000	8시간		

나. 부대시설 이용료

(단위 : 원/부가세 별도)

구분	대상	기본이용료	기본사용시기준	비고
피아노	스타인웨이	70,000	1회 4시간	
	야 마 하	40,000		
부대시설	컨벤션홀	220,000		
	리허설룸	100,000		
	공연연습실	200,000		
	개인연습실	50,000		

다. 비고

-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별 표]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(제14조 관련)

1. 사용료 일반기준

가.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
 나. 토·일·공휴일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%를 할증할 수 있다.
 다.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라.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% 이내, 입장료의 30%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

2.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

가. 공연장 및 충무갤러리 대관료

(단위: 원)

구분	기본대관료	기본사용기준	대상	비고
대관장	공 연	1,250,000	1회 3시간	클래식
	리허설	625,000	1회 3시간	
	대중 및 종합예술평일	2,500,000	리허설 및 오후공연 포함	뮤지컬, 무용, 대중콘서트, 오페라 등
	리허설	1,250,000	1회 3시간	
	심야 세팅·철수	2,500,000	1회 3시간	
공연장	공 연	500,000	1회 3시간	공 연
	리허설 및 세팅	250,000	1회 3시간	
	심야 세팅·철수	500,000	1회 3시간	
소관장	공 연	400,000	1회 3시간	공 연
	리허설 및 세팅	200,000	1회 3시간	
	심야 세팅·철수	400,000	1회 3시간	
충무갤러리	400,000	1일	회화, 조각 등 전시	

나. 부대시설 이용료

(단위: 원)

구분	대상	기본이용료	기본사용기준	비고
피아노	스타인웨이	70,000	1회 4시간	
	야마하	40,000		
부대시설	컨벤션센터	200,000		
	리허설룸	100,000		
	공연연습실	200,000		
	개인연습실	50,000		

다. 비고

-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개정안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별 표]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등(제14조 관련)

1. 사용료 일반기준

가.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 주간(월요일~금요일, 09:00~18:00)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.
 나. 기본 사용 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며, 사용료는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(단, 갤러리는 1일 8시간으로 한다)
 다. 토·일·공휴일과 평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30%를 할증할 수 있다
 라.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마.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% 이내, 입장료의 30%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.
 바. 오전 : 09시~12시, 오후 : 13시~18시, 야간 : 19시~22시, 심야 : 23시~02시

2. 문화시설 사용료 개별기준

가. 공연장 및 갤러리 대관료

(단위: 원 / 부가세 별도)

구분	기본대관료	기본사용기준	대상	비고
대관장	순수예술평일	1,250,000	1회 3시간	클래식
	리허설	625,000	1회 3시간	
	대중 및 종합예술평일	2,500,000	1회 3시간 평일 주간	뮤지컬, 무용, 대중콘서트, 오페라 등
	리허설	3,000,000	1회 3시간 토·일·공휴일 평일 야간 (리허설 포함)	
	심야 세팅·철수	1,250,000	1회 3시간	
공연장	공 연	500,000	1회 3시간 평일 주간	공 연
	리허설 및 세팅	250,000	1회 3시간 토·일·공휴일 평일 야간 (리허설 포함)	
	심야 세팅·철수	500,000	1회 3시간	
소관장	공 연	400,000	1회 3시간	공 연
	리허설 및 세팅	200,000	1회 3시간	
	심야 세팅·철수	400,000	1회 3시간	
갤러리	400,000	1일 8시간	회화, 조각 등 전시	
에그린 스페이스	150,000	4시간	전시, 공연	부대설비 별도
	200,000	8시간		

나. 부대시설 이용료

(단위: 원 / 부가세 별도)

구분	대상	기본이용료	기본사용기준	비고
피아노	스타인웨이	70,000	1회 4시간	
	야마하	40,000		
부대시설	컨벤션홀	220,000		
	리허설룸	100,000		
	공연연습실	200,000		
	개인연습실	50,000		

다. 비고

-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문화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